

대학원학칙 문화스포츠대학원 시행세칙

- 2004. 3.1 제정
- 2005. 3.1 개정
- 2005. 9.1 개정
- 2006. 3.1 개정
- 2007. 3.1 개정
- 2007. 9.1 개정
- 2008. 9.1 개정
- 2010. 3.1 개정
- 2010. 9.1 개정
- 2011. 3.1 개정
- 2012. 3.1 개정
- 2013. 9.1 개정
- 2015. 9.1 일부개정
- 2017. 9.1 일부개정
- 2018. 3.1 일부개정
- 2019. 3.1 일부개정

<문화스포츠대학·문화스포츠대학원행정실>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 문화스포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통문화와 콘텐츠, 외국어, 스포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승 발전 및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미래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 3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4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제 5 조 (학과 또는 전공의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으나, 전공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셋째 학기 초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전공변경신청서
 - 2. 학업성적증명서
- 제 6 조 (수강신청 및 정정)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7 조 (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전 10일부터 개강 후 20일 이내의 정한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일반휴학 기간은 통산 2년(4학기)을 넘지 못한다. 단, 질병치료 및 국가시험 합

격 후 연수를 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및 군복무(의무복무기간에 한함)로 인한 휴학은 특별휴학으로써 일반휴학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본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을 시행하지 않는다.

⑤ 본 대학원은 신입생 및 재입학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다.

제 8 조 (학점인정)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주임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교육기관 및 제휴 타 대학원 수료자는 본 대학원의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취득과목 인정은 현재 본인의 전공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교육과정 및 선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하며,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한 입학자는 각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수료 최소이수학점/시기 및 학기별 취득학점 상한)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를 위해 이수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수료시점은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학기별 취득학점의 상한은 교과학점 8학점(사회복지학과는 12학점)으로 하되, 선수과목 및 논문지도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과	전공필수	전공	일반선택	합 계
영어번역학과 문학예술학과	0	16	10	26
사회복지학과	0	24	3	27
ICT콘텐츠학과	4	16	6	26
스포츠비즈니스학과	4	12	10	26

제 11조 (논문지도학점) 논문지도 학점은 논문지도 해당 학기마다 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학점)으로 하며, 논문지도학점은 수료 최소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3차 학기 말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논문제출학위수여대상자는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4조 ①항 3번에 의해 논문제출이 면제된 자는 4, 5학기 중 1회 지도교수 지도를 받는다.

제 13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20일 이내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학위청구 자격) ①수료 요건 충족자 또는 충족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된 자
2. 논문제출학위수여대상자 : 5회 이상 등록하고 논문지도 2학기 이상 이수 혹은 이수예정자
3. 학점대체자(비논문) : 5회 이상 등록하고 4. 5학기 중 논문지도 1학기 이수 혹은 이수예정자

② 수료 요건 이외에 전공 2과목을 추가 취득하면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면제되나 이 경우에도 종합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단, 사회복지학과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 2과목을 5학기 이후에 취득해야 하며, 제 19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시험에 반드시 응시 및 합격하여야 한다.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연한)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입학년도로부터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휴학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 특례대상자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출산, 시국 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특례신청을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본 시행세칙 제 19조 2항에 의해 종합시험이 면제된 자는 특례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종합시험의 응시를 면제한다. <개정 2013.9.1.>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논문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자는 기 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16조 (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4월 30일, 후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종합시험의 과목 및 시행)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전공필수 2과목 이상으로 하고, 그 과목 및 내용은 해당 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종합시험은 매 학기 시행한다.

제 19조 (종합시험 응시 및 면제자격) ①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에서 3학기 이상을 평균성적 B 이상으로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균성적 B+ 이상인 자에게는 종합시험을 면제하되, 면제신청서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조 (시험위원회) 종합시험은 대학원장 주관 하에 과목별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장한다.

제 21조 (종합시험 합격판정) 시험과목은 과목당 70분으로 하고, 시험성적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22조 (논문지도료) 이미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에 소정의 논문지도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23조 (논문심사시기) 제출된 석사학위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시험은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판정한다.

제 24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 제 25조 (논문심사방법)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 예비에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 본심에서 논문내용에 대한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 제 26조 (논문합격판정) ① 논문의 평가는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A, B, C, F 등급으로 판정하고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③ 논문 제출 대상자가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시기까지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차후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 27조 (학위수여 심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28조 (학위수여) 석사학위 종합시험이 면제되었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되었거나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단, 논문은 본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번역서 및 창작집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29조 (장학금)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충실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의 수혜자와 장학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 30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별지서식 1]의 이수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때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 31조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장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 제 32조 (연구과정 이수학점) 본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과	전공과목	일반선택	합 계
영어번역학과 문학예술학과 ICT콘텐츠학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6	6	12
사회복지학과	12	6	18

- 제 33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 제 34조 (대학원위원회 회의)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대학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5조 (시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 말에 실시하며, 학기 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 36조 (출석) 출석이 전체 수업의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제 37조 (유고결석) ① 해외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유고결석 허용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단, 국내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유고결석의 기간 중 1/2은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고, 1/2은 결석으로 인정하여

총 결석횟수에 산입한다.

제 38조 (강의시간 수 및 보장) ① 실제 강의 시간 수는 과목마다 강의 예정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강의 시간 수가 학점 당 15시간에 미달한 때에는 이를 당해 학기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39조 (자격증의 종류) 본 대학원에서는 해당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번역사,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40조 (자격증시험 응시자격) 번역사(영어번역학과), 논술지도사(문학예술학과)의 자격증 응시자격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 16 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B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3.9.1.>

제 41조 (자격증 시험성적) 번역사, 논술지도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각 과목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존에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응시를 면제하고 '기합격'으로 인정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

제 42조 (자격증시험 과목) 번역사, 논술지도사의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번역사: 1) 해당 외국어의 번역시험
2) 해당 외국어 작문시험
2. 논술지도사: 1) 수사 및 논리
2) 문학교육론
3) 문장론

제 43조 (자격증수여) 본 대학원의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2]의 번역사 자격증, [별지서식 3]의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 44조 (폐강) ①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수강인원 3명 미만으로 한다.

② 전항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나 개설 교과목이 수강학생의 수료 및 자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자격이라 함은 학위취득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자격을 의미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제2항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3항 신설, 제15조 개정)

2. (경과조치) 제15조는 2004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2항 삭제, 제22조 개정)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내지 제43조 개정)
- 2. (경과조치) 제39조 내지 제43조는 2007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내지 제13조 개정, 제44조 신설)
- 2. (경과조치) 제12조는 본 세칙 시행일 현재 지도교수를 신청하지 않은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하며, 제13조는 동 시행일 현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제21조, 제41조 개정)
-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시행일 이전 제41조의 ‘기합격 인정’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기존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에 대하여는 교과 26학점 혹은 학점 구분 없이 12과목 이상 이수(논문지도 2회 별도)로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29조 개정)
- 2. (경과조치) ① 사회복지학과 200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과 26학점 혹은 학점 구분 없이 12과목 이상 이수(논문지도 2회 포함)로 적용한다.
② 제29조(장학금) 개정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항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32조, 제39조 내지 제43조 개정, 별지서식5 삭제)
- 2. (경과조치) 폐지된 중국언어지도학과의 재적생은 기존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32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제29조, 제40조 개정)

부 칙

1.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②, 제28조는 시행일 이후 수료 및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2. 대학원 학칙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제6조, 제7조, 제9조 ~ 제11조, 제14조 ①, 제15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조, 제 10조, 제32조, 별지서식 1,2,3 변경) 학과신설 : ICT콘텐츠학과 ICT콘텐츠전공 , 대학원 명칭변경 인문정보대학원->문화스포츠대학원)

부 칙

1.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 제32조 개정)
학과신설 :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스포츠비즈니스전공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⑤ 개정)
2. (경과초치) 개정 시행일 이전에는 고려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따른다.

[별지서식 1] 이수증서

제 호

이 수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교육과정 :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이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원장 ○○학박사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장 ○ ○ ○ (직인)

[별지서식 2] 번역사 자격증

제 호

번역사 자격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전공을 마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번역사 자격증 시험 심사에 합격하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원장 ○○학박사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번역사 자격증을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장 ○ ○ ○ (직인)

학위번호 : 고려대 ○○○○(석)○○○○

[별지서식 3] 논술지도사 자격증

제 호

논 술 지 도 사 자 격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과 전공을 마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논술지도사 자격증 시험 심사에 합격하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원장 ○○학박사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장 ○ ○ ○ (직인)

학위번호 : 고려대 ○○○○(석)○○○○